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기관경고·징계요구

제 목 부당한 지시와 제3자의 알선에 의한 계약업체 선정 등

기 관 명 광주광역시

징 계 대 상 자 광주광역시 지방○○○○○ ○○○
(전 ○○과)

징 계 의 종 류 중징계

내 용

지방○○○○○ ○○○는 2015. 7. 31.부터 2016. 8. 8.까지 광주광역시 ○○과에서 물품구매, 공사계약 등 각종 계약업무를 처리한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상급자로부터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에는 서면이나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그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³³⁾과 상담할 수 있고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강령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 및 물품구매 업무 등을 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은 보다 엄격하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계약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는 행위,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이

33) 「광주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제2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광주광역시 본청은 ○ ○위원장, ○○○○본부는 ○○○○과장, 소속 기관 중 기관의 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인 기관은 감사업무 담당과장 또는 주무과장(담당관 및 부장을 포함한다)을 각각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상급자가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을 위반하게 하는 지시,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광주광역시에서는 물품 구매 등 계약 업무를 추진하면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시장조사, 원가분석 등의 검토를 거쳐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의 결재를 받는 등의 절차를 무시한 채 계약실무책임자로 근무하던 지방○○○○○ ○○○가 ○○계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전 시장 ○○○인 ○○○(당시 지방○○ 0급)으로 부터 소개 받은 ○○○과 ○○○라는 제3자와 협의하는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특정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및 물품구매 실무담당자에게 선정된 업체와 계약하라고 지시하는 방식으로 물품구매 및 계약 업무를 추진하는 등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1. 부당한 지시와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알선에 의한 타인의 부당한 이익 도모

광주광역시 ○○○에서 계약업무 실무책임자로 근무한 지방○○사무관 ○○○는 2015. 8.경 서구 ○○○에 있는 시청 인근 ○○○에서 당시 시장 ○○○관인 ○○○으로부터 ○○○을 소개 받으며 ○○○ 사장을 ○○○ 본인으로 생각하고 계약업무 지원을 받아 ○○○이 지정하는 업체를 물품납품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어서 2015. 9. ~ 10. 경 서구 ○○○에 있는 000 ○○○문화회관 인근 ○○○에서 ○○○관인 ○○○으로부터 ○○○를 소개 받

으면서 ○○○와 ○○○이 지정하는 업체를 물품납품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계약 실무책임자인 지방○○○○○ ○○○는 ○○○ 및 ○○○가 광주광역시의 물품구매 계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인 ○○○의 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 및 ○○○에게 계약 관련 정보를 알려준 후 그들이 지정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그 결과 ○○○과 ○○○가 요청한 업체에게 광주광역시가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을 발주하여 줌으로써 ○○○과 ○○○는 그 업체로부터 알선의 대가³⁴⁾를 받았으며 계약을 지시한 전 ○○○은 그 대가로 ○○○과 ○○○로부터 뇌물을 수수³⁵⁾하는 등의 범죄행위가 발생하였다.

2.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등

가. 2015년 ○○○○ ○○시스템 구축공사 등 5건 관급자재 구매 관련

광주광역시 ○○과에서 2015년 ○○○○○ ○○시스템 구축공사(동구 ○○○로) 등 5건 관급자재 구매를 의뢰(○○과-0000호, 2015. 0. 0.)하자 ○○과에서는 구매 의뢰된 관급 자재 중 가로등주(556개, 472백만원)에 대해 총액입찰로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실에 일상감사를 요청(○○과-0000호, 2015. 0. 00.)하였다.

이에 따라 ○○○실에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한 후 ‘적합’ 의견으로 일상감사 결과를 통보(○○관-00000호, 2015. 0. 00.)하였다.

34) ○○○은 7개의 업체로부터 용역 및 물품계약(589백만원)을 알선한 대가로 33백만원을, ○○○는 8개의 업체로부터 용역 및 물품계약(483백만원)을 알선한 대가로 128백만원을 받음

35) ○○관 ○○○은 ○○○과 ○○○로부터 각각 3백만원과 5백만원을 받음

그런데 ○○과에서는 내부 구매계획과 일상감사를 거쳐 구매방법이 확정된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 실무책임자인 지방○○○○○ ○○○가 5개의 사업권역 중 3개 권역은 구매 금액이 1억원 미만이니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할 것을 실무담당자인 지방○○○○○ ○○○에게 지시하였다.

실무담당자 ○○○은 입찰로 구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자 실무책임자인 ○○○은 철제가로등주 556개 중 286개(238백만원)를 ○○○○○, ○○○○, ○○○○○○○ 등 3개 업체의 제품으로 선정하여 본인이 직접 나라장터에 물품조달요청서를 작성한 후 ‘조달구매 요청(○○과-0000호, 2015. 00. 0.)’ 내부결재(분임재무관인 ○○과장 ○○○ 전결)를 받았다.

이후 실무담당자 ○○○은 나머지 가로등주 270개(기초금액 232백만원)에 대해서만 총액입찰로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입찰공고 내부결재(○○과-0000호, 2015. 00. 0.)를 받고 입찰로 가로등주를 구매하였다.

나. 광주○○○○센터 공용공간 집기비품 구매 관련

광주광역시 ○○○○과에서는 ○○○○회의 계약심사(○○○○회-0000호, 2016. 0. 0.)를 거쳐 ○○과로 가구류 및 전자제품류 등(총 564개, 금액 144백만원) 광주○○○○센터 공용공간 집기비품 구매계약을 의뢰(○○○○과-0000호, 2016.0.0)하였다.

계약 실무책임자인 지방○○○○○ ○○○은 계약 실무담당자인 지방○○○○○○○ ○○○이 직접 구매하기 곤란하다고 애로사항을 예기하자 다른 계약 실무자인 지방○○○○○ ○○○에게 업무를 추진하게끔 담당자를 변경하였다.

이후 실무담당자인 ○○○은 분임재무관인 ○○과장에게 구매 검토 보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에서 요청한 물품내역과 다른 업체 및 물품 식별 번호 등이 기재된 서류 등을 ○○○로부터 전달 받고 계약의뢰 후 상당 기간이 지났으니 빨리 추진하라는 실무책임자 ○○○의 지시를 받고 주말에 출근하여 나라장터에 그대로 전산 입력하여 물품구매요청서를 작성(2016. 6. 12. 일요일)하여 조달구매 요청 내부결재(○○과-00000호, 2016. 0. 00.)를 받았다.

다. ○○산단 외곽도로 관급자재(LED등 외 5종) 구매 관련

광주광역시 ○○○○본부에서는 ○○산단 외곽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LED 등 외 5종(조달수수료 포함 552백만원)에 대해 관급자재를 구매해 줄 것을 ○○과에 요청(○○과-000호, 2016. 0. 00.)하였다.

이에 따라 ○○과에서는 요청한 물품 중 125W LED등 305개(226백만원)를 구매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의 사전 절차인 사전규격공고(○○과-0000호, 2016. 0. 00.)를 하였다.

그런데 계약 실무책임자인 지방○○○○○ ○○○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추진할 경우 결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주)의 조달우수제품으로 구매할 것을 실무담당자인 지방○○○○○ ○○○에게 지시하였으나 ○○○이 계속 반대를 하자 금액을 둘로 나눠 1억원 이상은 한 건으로 하여 입찰로 하고 나머지 9천만원 정도는 제3자 단가계약으로 ○○○○(주)를 포함하여 구매하자고 하였다.

결국 ○○○○본부에서 요청한 LED가로등기구(125W) 305개 중 151개(105,700천원)에 대해서만 제한경쟁입찰로 구매하는 것으로 감사위원회에 일상감

사를 요청(○○과-0000호, 2016. 0. 00.)한 후 절차를 거쳐 입찰로 구매(92,934천원)하였고, 나머지 155개(일상감사 결과와 다르게 1개 증가)는 제3자 단가계약 제품으로 조달구매하면서 ○○○○(주) 등 6개 업체로 분할하여 제품을 구매(93,226천원)하였다.

3. 차량 조달구매 요청시 특정지점 및 특정 판매인을 기재

광주광역시에서는 교통약자 전용차량(택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차량을 조달구매하고자 나라장터를 통해 물품조달요청을 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그 요청서에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식별번호 외에 그 물품을 공급하는 회사의 특정대리점과 특정 판매인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등 물품구매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물품조달 요청시 특정지점 및 특정 판매인 지정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매건명	물품조달 요청일	수량	금액	특정인 지정내역	기재하게 된 경위	구 매 담당자
교통약자 전용차량	2014.9.25.	8	305	3대 : ○○자동차 ○○지점 ○○○팀장 2대 : ○○자동차 ○○지점 ○○○차장 3대 : ○○○○○(주) ○○○○○무충광 ○○○	○○과장(○○○) 지시	○○○
수소연료 전지자동차	2014.10.13.	3	434	○○자동차 ○○지점 ○○○과장		
교통약자 전용차량	2015.9.23.	5	155	○○자동차 ○○지점 ○○○차장	○○계장(○○○) 또는 ○○과장(○○○) 지시*	○○○
수소연료 전지자동차	2016.8.17.	11	901	○○자동차 ○○지점 부장 ○○○	인터넷 조회 후 ○○지점 통화시 조달청 쇼핑몰에 담 당자 이름 기재 요청	○○○
교통약자 전용택시	2016.8.17.	8	503	○○자동차 ○○지점 ○○차장 ○○○	○○과장(○○○) 지시	

* 당시 계약 실무책임자인 지방○○○○○ ○○○는 ○○과장의 지시였다고 주장

따라서 위 사람 지방○○○○○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은

[기관경고] 계약을 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이 계약업체 선정 과정에서 상사 또는 외부인의 부당한 압력, 청탁 등에 의하여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위 관련자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중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